

[별표 3] 입주자 선정 기준 (제11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2항 관련)

<p>1.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: 3점</p> <p>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: 2점</p>
<p>2.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3인 이상 : 4점</p> <p>나. 2인 : 3점</p> <p>다. 1인 : 2점</p>
<p>3.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(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)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24회 이상 : 3점</p> <p>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: 2점</p> <p>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: 1점</p>
<p>4.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5년 이상 : 3점</p> <p>나. 3년 이상 5년 미만 : 2점</p> <p>다. 3년 미만 : 1점</p>
<p>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: 2점</p>
<p>6.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,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)을 부양하는 사람 : 1점</p>